##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98

발의연월일: 2025. 1. 2.

발 의 자: 강선우·임오경·박해철

김윤덕 · 서미화 · 조승래

김교흥 • 임호선 • 윤호중

전진숙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,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,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.

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.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·연구·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,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.

또한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(안 제1조의2 및 제4조 등)

#### 법률 제 호

###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국가 등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·연구·진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,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중 "보조"를 "보조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, 보조 및 지원의 기준·관리"로 한다.

③ 정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 전단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 제22조제1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 제23조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 제25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조의2(국가 등의 책무) 국가
	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
	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
	을 바탕으로 교육·연구·진료
	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, 공공
	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민에게
	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
	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
	<u>마련하여야 한다.</u>
제4조(정관) ① (생 략)	제4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	②
때에는 <u>교육부장관</u> 의 인가를	<u>보건복지부장관</u>
받아야 한다.	
제10조(임원) ① (생 략)	제10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	2
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	
해당하는 사람(이하 "당연직	
이사"라 한다)과 이사회의 추	
천을 받아 <u>교육부장관</u> 이 임명	<u>보건복지부장관</u>
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	,,
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	
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	
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	

- 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~ 5. (생략)
-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 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④·⑤ (생 략)
- 제14조(대학병원장) ① ② (생 제14조(대학병원장) ① ② (현행 략)
  -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 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
  - ④ ~ ⑦ (생 략)
- 제19조(출연 또는 보조) ①・② 제19조(출연 또는 보조 등) ①・ (생 략)
  -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・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(借 款)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 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.
  - ④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</u> | ④ <u>제1항부터</u> 제3항까지에 따 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  - ⑤ (생략)
- 제2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원 제2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--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

_									
									•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(3) -----
- ---보건복지부장관-----.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- 과 같음)
- ---보건복지부장관-----
  -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 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정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른 출연, 보조 및 지원의 기준 • 관리-----
  - ⑤ (현행과 같음)

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<u>교</u> 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22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 원
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
작성하여 「공인회계사법」 제
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
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
·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
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
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② (생략)

제23조(감독) 교육부장관은 대학 병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업무·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#### 제25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<u>보건</u> <u>복지부장관</u>	-
 제22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	
<u>장관</u>	_
 제2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	
<u>보건복지부장관</u>	